

제19162호

관 보

2017. 12. 28.(목요일)

	수산물 양식용부자	0.287
전 지 류	수은전지	0.600
	산화은전지	0.722
	리튬전지	0.749
	니켈·카드뮴전지	0.419
	망간전지·알칼리망간전지	0.225
	니켈수소전지	0.219
	곤포사일리지용 필름	0.313
	김발장	0.799

부칙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●환경부고시제2017-244호

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「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」(환경부고시 제2017-106호, 2017.6.2)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·고시합니다.

2017년 12월 28일

환 경 부 장 관

「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」 일부 개정

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15호와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5. "전자문서"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되는 표준화된 정보를 말한다.
16. "전자화문서"란 종이문서와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.

제7조제1항제2호의 "규칙 제45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"를 "규칙 제46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또는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"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"규칙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와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 3부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위해관리계획서 비상대응분야 요약서를"을 "제1항 각 호의 서류를"로 하며 단서 조항의 "자료만을"을 "자료(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)만을"으로 한다.

제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⑥ 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또는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할 때에 제7조의3에 따라 해당 서류의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이동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제출하는 경우, 종이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3(위해관리계획서의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의 제출 등) ① 사업자가 법 제41조와 규칙 제46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할 때 별지 제3호서식부터 제19호서식까지의 서류는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.

- ② 위해관리계획서 중 전체배치도, 설비배치도, 공정흐름도, 공정배관계장도 등의 도면은 전자화문

제19162호

관 보

2017. 12. 28.(목요일)

서를 제출하고, 그 밖의 서류로서 제1항에서 정한 서류 외의 것은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도면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자화문서로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소명하여 안전원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전자화문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.

④ 제7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의 오류 등으로 위해관리계획서를 검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전원장은 해당 서류를 제출한 자에게 종이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3조에 제5항과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제7조제6항 및 제7조의3에 따라 전자화문서로 제출된 서류의 검토결과를 제2항·제3항에 따라 통보할 때에는 해당 전자화문서의 명칭, 작성일자, 전자화문서의 크기, 최종수정일자 및 제출일자 등을 제1항·제2항의 검토결과서에 명시하여 해당 전자화문서가 검토받은 자료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⑥ 사업자는 제1항·제2항에 따라 적합 또는 조건부적합으로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경우, 검토결과서와 검토필인이 표시된 서류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.

제6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0조(제검토기한) 환경부장관은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별지 제18호 서식 중 “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”를 “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부칙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8호서식]제55조 관련

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62호서식]

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		이 요약서는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의 화학사고 위험성 및 화학사고 발생시 행동 요령 등을 지역주민에게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	
사업장 상호(명칭)			
사업장 위치(주소)			
사업장 대표전화		(전화번호:)	
유해화학물질 취급정보	종류		
	유해성		
	사고		
	위험성		

제19162호

관 보

2017. 12. 28.(목요일)

사고 발생시 대응정보	영향 범위	
	방제장비 보유현황	
	경보 전달방법	
	행동요령	
	비상연락 기관 및 전화번호	

주) ① 종류란에는 취급하는 사고대비물질의 종류를 작성한다.

② 유해성란에는 인체 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쉽게 작성한다.

③ 사고위험성란에는 화재·폭발 또는 유출·누출 사고와 같은 발생 가능한 사고의 형태를 작성한다.

④ 영향범위란에는 제31조의 대안의 사고시나리오의 영향범위에 해당하는 행정구역(동, 읍면리 등)을 모두 작성한다.

⑤ 방제장비 보유현황란에는 제22조의 방제장비 보유현황 중 방제장비 및 도구명, 용도, 수량(현황) 등을 작성한다.

⑥ 경보전달방법란에는 제36조제3호의 사고 발생시 대피경보를 작성한다.

⑦ 행동요령란에는 제36조제4호의 사고 발생시 주민 행동요령, 응급조치 요령 주민대피 경로 및 장소를 작성한다.

⑧ 비상연락기관 및 전화번호란에는 사고대응 관련 기관(관할 소방서 및 관할 환경청 등)의 전화번호 및 사업장의 24시간 비상전화번호를 작성한다.

● 환경부고시제2017-245호

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른 「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」(환경부고시 제2014-260호, 2014.12.31)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·고시합니다.

2017년 12월 28일

환 경 부 장 관

「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」 일부 개정

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화학물질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3조, 같은 법 시행규칙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”를 “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3조, 같은 법 시행규칙”으로 하고, “규모 미만의 유해화학물질(이하 “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”이라 한다)을 규정함”을 “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규모를 정함”으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)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규모가 별표 1에 규정된 수량(이하 “소량기준”이라 한다) 미만인 경우에는 「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 제19조제3항에 따라 규칙 별표 4 제1호가목·나목 및 같은 표 제3호의 내용만 작성